
Policy and Law Report _Vol.116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1.12.20~ 12.26) -

December 27, 2021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마지막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면서 지난 한해동안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과 입법전략자문팀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고객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2022년 새해 다시 보다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기획재정부	• 「제17차 혁신성장 빅3(BIG3) 추진회의」 개최 기획재정부는 「제17차 혁신성장 빅3(BIG3*) 추진회의」를 주재함 * 빅3(BIG3):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3대 새성장동력 주요 내용으로는 ① BIG3 산업동향 및 분야별 정책추진 상황 - 미래 경제성장을 견인할 바이오 핵심산업 육성을 위해 혁신신약, 의료기기, 재생의료 분야에 1,759억원 투자 ② BIG3 산업별 중점 추진과제 -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 무공해자동차 전환 가속화 방안 - '22년 반도체 시장전망 및 정책방향 -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개인 건강정보 활용 지원방안 등이 있음	2021-12-21
	• 공공조달 혁신을 위한 10대 핵심과제 선정 기획재정부는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공공조달의 혁신성·공공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공공조달 혁신 종합계획(안)」을 논의하고 4대 전략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함 주요 내용으로는 (전략1)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 강화 ① 공공조달 전반에 E·S·G(환경·사회가치·지배구조) 도입 확산 ② 공공조달을 활용하여 기술혁신과 산업경쟁력 제고 등 정책목표 달성 (전략2) 혁신조달을 속도감 있게 확산하는 생태계 조성 ③ 혁신조달 정책연구, 혁신제품 발굴·평가, 교육·컨설팅, 해외진출 지원 등 혁신조달全过程를 통합 지원하는 원스톱 혁신조달 전문지원센터 설립 ④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잠재적 혁신조달 수요를 발굴하는 인큐베이팅 확산 및 민간 전문가(벤처협회, 벤처캐피탈 등)를 통해 유망 조달기업, 혁신적 제품을 발굴하는 스카우터 육성 * 인큐베이팅 과제(개): ('21) 19 → ('22) 80 / 스카우터 규모(명): ('21) 20 → ('22) 50	2021-12-24

부처	내용	일시
	⑤ 공공문제 해결 R&D → 혁신제품 개발·구매 → 공공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확산 (전략3) 혁신촉진형 공공계약제도 개편 ⑥ 기술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공낙찰제도를 개편하고 새로운 국가계약제도를 시범 운영하는 시범특례제도*를 활성화 * 現 법령의 규제를 받지 않는 새로운 계약제도 시범운영 → 성과평가 통해 정규 제도화 예) 공공SW사업에 민간이 참여하는 민간투자형 SW계약제도 도입 등 ⑦ 공공계약 과정의 공정성(중소기업 보호), 국민안전, 환경·고용 등 사회적 가치 구현 (전략4) 조달제도·행정 인프라 고도화 ⑧ 공공조달 관련 법체계*를 대폭 정비하고, 다기화된 공공조달 특례제도에 대한 사전·사후 평가제 도입 등 종합 정비 * 조달사업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판로지원법 등 조달·계약 관련 법령 운영 중 ⑨ 「차세대 나라장터」 등 디지털·지능형 조달시스템 구축 ⑩ 조달계약·지출* 통계 작성 일원화** 등 정책 인프라 정비 * (조달청) 공공시장 전체 조달규모<계약기준> (중기부) 총 공공구매 실적<지출기준> ** 관련 법령·시스템 개편을 통해 집계주체를 일원화하고, 조달청·중기부가 합동 발표	
과학 기술정보 통신부	•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 보호전략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구도 속에서 우리나라의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 추진해 나갈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기술패권 경쟁 → 국가 간 경쟁·협력의 지렛대가 될 기술주권 확보가 해답 - 패권경쟁의 출발점이자 승패를 결정지을 열쇠는 기술, 주요 선도국은 10개 내외 기술을 선정해 기술 우위확보를 위한 총력전 전개 - 전략기술에 대한 국가차원 우선순위 설정과 전략 마련 시급 ② 우리나라가 반드시 주도권을 확보해야 할 10개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별 - 기술별 특성을 고려한 육성·보호 종합전략을 구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개발투자, 기반(인프라)·세제, 표준선점·특허, 기술보호 등 전방위 지원책 강화 ③ 10년 내 선도국 수준의 기술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국가적 역량결집 -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감염병, 치매, 뇌질환 등에 대한 예방·치료 원천기술 개발 등 국민건강 증진에 1,289억원 투자	2021-12-22

부처	내용	일시
	- 국가 간 경쟁·협력의 지렛대가 될 수 있는 ‘대체불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과감하고 독보적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는 도전적 목표달성 연구개발 본격화 - 향후 기술진보·산업지형·국제질서 변화 등을 반영하여 국가필수전략기술을 지속 보완·발전시킬 견고한 추진체계* 구축 * 필수전략기술위원회(장관급) 신설, 「(가칭)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추진	
산업통상 자원부	• 「2021 석유 컨퍼런스」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중립시대의 석유산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21 석유 컨퍼런스」를 개최함 주요 토론 내용 ① 성공적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석유의 역할 - 에너지안보, 탄소중립 이행기 필수조건 -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에너지 혁신 과제 ② 국가별 탄소중립 동향과 세계석유수급 동향 및 전망 - 국가별 탄소중립 동향 및 세계 석유수급 - 탄소중립과 에너지시장 ③ 국제 원유시황과 유가 전망 - 2021 석유수급·유가 분석 - 2022 국제유가·석유시장 전망 ④ 탄소중립 시대를 준비하는 석유기업의 혁신 - 주요국 석유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전략 - 석유유통시장의 변화와 혁신 ⑤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석유산업 연구개발 과제 - 에너지 탄소중립을 위한 석유산업 기술 - 기술 난제 및 정책 과제 ⑥ 탄소중립형 석유대체연료 개발동향 및 향후 전망 - 국내 석유대체연료 개발동향 - 국내외 석유대체연료 보급현황 및 향후 전망	2021-12-21

부처	내용	일시												
국토 교통부	•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발표 국토교통부는 수소화물차 시범운행을 계기로 2050 탄소중립 선언(`20.10), 2030 국가온실 가스감축목표 상향(`21.10)에 대응하기 위한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발 표함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은 매 5년마다 정책 추진실적과 시장상황, 기술진보 등을 반영하 여 수정할 계획으로, 이번 첫 로드맵은 향후 정량적이고 적시성 있는 탄소중립 과제관리를 위 한 "데이터 기반의 탄소중립"에 착안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30년까지 건물 32.8%, 수송 37.8% 탄소감축('18 比)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② 보다 과학적인 탄소중립 정책성과 평가를 위한 데이터기반 구축 ③ 국민과 기업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아이디어·기술 공모 추진 ④ 그간 통계가 미비했던 도시 내 녹지의 탄소흡수량을 발굴하여 UN 제출 ⑤ 중동·동남아 등에서 국토교통 첨단기술을 활용한 국외감축 사업 적극 발굴 등	2021-12-23												
금융 감독원	• ‘회사 유형별’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및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회사 유형별로 감사 인 선임제도를 설명하고 회사가 법규를 잘 몰라 선임기한, 절차 등을 위반하여 감사인이 지정 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안내함 *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 (2조원 이상 상장회사 등은 사업연도 개시 이전) 회사 유형별 선임제도 요약 <table><tr><th>회사 유형</th><th>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 (D)]</th><th>사업 연도</th><th>자격요건</th><th>감사인 선정절차</th></tr><tr><td>① 주권상장회사</td><td rowspan="2">D + 45일 (사업연도 개시 전**)</td><td rowspan="2">3년</td><td>등록 회계법인</td><td rowspan="2">감사위원회 또는 감사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td></tr><tr><td>② 대형비상장 주식회사·금융회사</td><td>회계법인</td></tr></table>	회사 유형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 (D)]	사업 연도	자격요건	감사인 선정절차	① 주권상장회사	D + 45일 (사업연도 개시 전**)	3년	등록 회계법인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	② 대형비상장 주식회사·금융회사	회계법인	2021-12-22
회사 유형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 (D)]	사업 연도	자격요건	감사인 선정절차										
① 주권상장회사	D + 45일 (사업연도 개시 전**)	3년	등록 회계법인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										
② 대형비상장 주식회사·금융회사			회계법인											

부처	내용					일시
	③ 비상장주식회사	D + 45일	1년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④ 유한회사	D + 45일			감사 또는 회사 (사원총회 승인***)	
* 단, 초도감사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 ** 상법 등에 따른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의 선임기한은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임 *** 감사가 없고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유한회사는 사원총회 승인 필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기획재정부	• 「관세법 일부개정」 (2022.7.1. 시행 예정) 관세탈루행위를 방지하고 세액보정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그 세액에 대하여 보정을 신청하였어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세계관세기구 협약 개정에 따른 최신 품목분류체계를 반영하여 관세율표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부당 과소신고된 세액의 보정신청 혜택 배제 (제38조의2제6항 신설) - 종전에는 납세의무자가 과소신고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후 세액의 보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② 소액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확대 (제42조제5항) - 물가·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소액 체납세액의 기준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③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 연장 (제89조제6항제1호) - 민간항공기 협정대상 물품에 한정하여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을 3년 연장하여 2024년까지 면제하고,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감면율을 조정함 ④ 관세 환급 대상 확대 (제106조의2) -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후 수출사실을 세관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 여행자가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등에서 구입한 물품을 환불한 경우에는 자진신고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⑤ 원양어선에 사용되는 어로용품 등에 대한 통관절차 간소화 (제143조) - 원양어선의 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무상(無償)으로 제공되는 어로용품 등을 하역·환적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별도의 납세신고나 환급절차 없이 어로용품을 하역·환적할 수 있도록 함 ⑥ 의무 이행 요구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세관공무원의 조사 권한 근거 마련 (제227조제3항 신설) -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한 세관장의 의무 이행 요구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세관공무원에게 조사 권한을 부여함	2021-12-21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기획재정부	⑦ 원산지확인위원회 폐지 (현행 제232조의3 삭제) - 원산지 관련 주요 쟁점이 감소하는 등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운영 필요성이 감소함에 따라 원산지확인위원회를 폐지함 ⑧ 안전성 검사 결과에 따른 통관보류 근거 마련 (제237조제1항제4호의2 신설) - 세관장은 수출입 물품의 성분·품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불량·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 ⑨ 국제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제256조의2 신설) - 세관장은 관세청장과 우정사업본부장이 협의하여 정한 국가에서 발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세관신고정보 등이 포함된 전자정보를 사전에 제출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관우체국장으로 하여금 그 우편물을 반송하게 할 수 있도록 함 ⑩ 관세율표 정비 (안 별표) - 세계관세기구(WCO)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하고, 변화된 무역환경에 맞추어 세목을 조정하는 등 관세율표를 정비함	2021-12-21
	• 「법인세법 일부개정」 (2023.1.1. 시행 예정) 사업양수도를 통한 탈법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의 공제범위를 제한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방식을 개선하며,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합리화하는 한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50퍼센트 한도 기부금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50퍼센트 한도 기부금 단체에 추가 (제24조제2항제1호라목7)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50퍼센트 한도 기부금 단체에 추가하여 해당 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②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범위 제한 등 (제50조의2 및 제113조제7항 신설) -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에 따른 결손금을 양수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못하도록 제한함 -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한 내국법인은 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동안 자산·부채 및 손익을 양도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함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기획재정부	③ 간접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편 (제57조제1항 후단 및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신설, 현행 제57조의2 삭제) - 간접투자회사·투자신탁 등이 국외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간접투자회사 등의 과세표준 신고 시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하던 특례를 폐지하고, 투자자인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거나 간접투자회사 등이 투자자인 내국법인에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하도록 함 ④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대상 확대 (제60조의2제1항제3호 신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가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후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 ⑤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신설 (제74조의2 신설) -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도록 함 ⑥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합리화 제75조제1항 및 제3항) -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그 제출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2를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도록 하여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함 ⑦ 외국법인의 국내 운영 사무소 현황 자료 제출 의무화 (제94조의2 신설) - 외국법인이 국내에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무소 현황 자료를 그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021-12-21
	• 「주세법 일부개정」(2022.1.1. 시행 예정)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류 제조업자의 납세부담 완화와 소상공인, 자영업자인 판매자들에 대한 실질적 혜택 지원을 위하여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생맥주)에 대하여 일반 맥주에 적용되는 세율의 80퍼센트로 경감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기간을 2년 연장하고, 수출용·원료용 주류 등 미납세 주류를 반출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 등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납세자의 의무사항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주요 내용으로는 ① 생맥주 세율경감에 대한 특례기한 연장 (제8조제1항제2호다목) -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에 대하여 일반 맥주에 적용되는 세율의 80퍼센트로 경감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② 주류 미납세 반출 시 승인 관련 납세자 의무 규정 (제17조제2항 신설) - 수출용 · 원료용 주류를 반출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납세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함	
행정안전부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2.21. 시행) 코로나19 재난의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회계정보의 작성 ·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기업의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시켜 운영해야 하는 사업 연도를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2023년에서 2024년으로, 그 밖의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2024년에서 2025년으로 1년씩 유예하려는 것임	2021-12-21
환경부	•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 일부개정」 (2022.1.1. 시행 예정) 면세유의 부정유통 금지 위반 및 정부의 납세보전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교통시설 확충 사업, 에너지 · 자원 사업 및 환경 보전 · 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으로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의 7퍼센트가 활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근거 마련 (제25조제3항) - 면세유의 부정유통 금지 위반 및 정부의 납세보전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규정을 신설함 ②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유효기간 연장 (법률 제4667호 부칙 제2조) -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021-12-21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국토 교통부	• 「건축법 시행령」(2021.12.23. 시행) 건축공사에 사용되는 건축자재 등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방화문, 복합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耐火構造)에 대한 품질인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7733호, 2020. 12. 22. 공포, 2021. 12. 23. 시행)됨 이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아야 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를 강판과 심재(心材)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방화문과 방화구획에 사용되는 자동방화셔터 등으로 정하고, 품질인정업무 수행기관을 건설기술과 관련된 시험과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자재 등의 품질 유지·관리 의무 위반자에게 할 수 있는 조치의 내용을 품질인정을 받지 않은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공정에 대한 공사 중단 명령, 건축자재에 대한 사용 중단 명령 등으로 정하는 등 품질인정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021-12-21

②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환경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제11호에는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제10호에도 명확히 규정하여 법령간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임 ※ 의견 제시기간 : 12/20(월)~12/24(금)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교통환경과)로 제출	2021-12-20
국토교통부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관리체계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48호, 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위한 인증관리센터 설치·운영 (안 제23조) -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증기관과 검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감독 지원, 안전조치 이행 점검 기술 지원, 인증 관련 기술 및 제도 연구, 인증 업무 지원 및 수수료 관리 업무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등 인증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인증관리센터의 설치·운영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면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함 ②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방법 도입 (안 제24조, 제25조, 별표 1) - 인증기관의 지정 관련 신청, 심사 및 지정 시 절차·방법을 정하고, 인증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능력, 재정능력, 시설 및 장비 관련 적정한 기준을 정함 -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지정된 인증기관을 고시하여 누구나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	2021-12-24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③ 검증기관 지정 등 준용 규정 마련 (안 제26조) - 검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인증기관을 준용하되, 검증기관이 따로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는 별도로 정하고, 이상행위 정보를 탐지하기 위한 검증기준·절차와 검증방법 등 업무수행방법에 관해 기본적인 내용을 정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함 ④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신고 규정 도입 (안 제27조) - 인증기관과 검증기관은 인증업무준칙과 검증업무준칙의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경우 재·개정된 인증업무준칙 또는 검증업무준칙을 다른 관련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하도록 함 ⑤ 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등 마련 (안 제28조, 별표 2) - 인증기관 또는 검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인증업무와 검증업무 정지 시 그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그 처분을 고시·통지하도록 하여 가입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함 ⑥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 및 대응계획 등 준비 (안 제30조) -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및 검증업무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가입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계획 및 조치를 정함 ⑦ 인증서의 폐지 절차·방법 규정 (안 제31조) - 인증기관은 인증서가 폐지될 경우 인증서 폐지목록 등 인증서 상태정보를 가입자나 인증관리센터, 인증기관 및 검증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인증서의 폐지로 인한 사고 위험 방지 및 인증업무 관리를 엄격히 할 수 있도록 함 ⑧ 과징금의 부과·징수 근거 마련 (안 제32조, 제33조, 별표 3) -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가입자의 이익이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업무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여 인증기관이 동종의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므로 그 구체적 기준과 부과 및 납부의 절차를 정함 ⑨ 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의무 규정 (안 제34조) - 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수행으로 인해 가입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을 위해 준비해야 할 보험금 또는 공제금, 적립할 준비금의 최저 기준을 정하고, 그 용도와 배상자력 유지를 위한 방법을 정함 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 (안 제36조) - 인증기관과 및 검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⑪ 과태료의 부과기준 규정 (안 제37조, 별표 4) -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법률이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그 구체적 기준을 정함 ※ 의견 제시기간 : 12/24(금)~12/29(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과)로 제출	
국민권익위원회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청탁금지법상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설날·추석에 한하여 두 배로 하되 그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581호, 2021. 12. 16.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 적용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두 배로 하는 기간은 설날·추석 전 21일부터 설날·추석 후 3일까지로 함 (안 제17조제2항, 별표 1) ※ 의견 제시기간 : 12/21(화)~12/27(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청탁금지제도과)로 제출	2021-12-21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기획재정 위원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의원 등 15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사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사가 공동 컨소시엄을 이뤄 동등한 지위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수직적인 원·하도급자가 아닌 대등한 관계로 전환, 고질적 병폐인 저가 수주경쟁, 하청의 재하청 등의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는 장점이 있음 그런데, 발주처들이 행정편의와 사후관리 용이함을 이유로 종합 위주의 발주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100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계약의 경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의무화하고 부계약자가 시공의 30%이상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원·하도급간 수평적 협력관계를 정착시키고, 하도급 부조리를 뿌리 뽑아 부실시공을 예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안 제25조제3항 신설)	2021-12-20
과학 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기업집단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음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기업집단의 소유제한 규정이 마련된 2008년 국내총생산이 1,154조 원, 2020년 국내총생산이 1,924조 원이고, 자산총액 10조 이상 기업집단 수는 2008년 17개에서 2021년 40개로 늘어나 국내 경제규모 자체가 성장한 점을 보면 현행 민영지상파방송사에 대한 소유규제는 당초 도입취지와는 달리 시장축소형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음 자산총액 기준을 특정금액으로 하는 경우 국내경제규모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국내총생산에 연동되는 비율을 특정하여 규율함으로써 국내경제 규모에 따라 규제수준의 적절성이 확보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유제한 기준이 되는 기업집단 자산총액을 국내총생산액의 1,000분의 5 이상 1,000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그 비율을 정하도록 완화하려는 것임 (안 제8조제3항)	2021-12-20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과학기술 정보통신 위원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등 10인)」 최근 동영상 스트리밍서비스 이용의 증가로 인해 인터넷망 트래픽의 폭증에 따른 망 이용대가 지불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특히 현재 대부분의 국내외 콘텐츠·플랫폼 사업자가 인터넷망 이용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협상력의 불균형을 이용하여 정당한 망 이용대가 지불을 거부함에 따라 사업자 간 채무부존재 소송, 부당이득반환 청구 반소 등 소송전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 이용·제공 계약 체결과 정당한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터넷망 이용 및 제공 관계에 있어 공정한 경쟁과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안 제22조의7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주요 내용으로는 ① 부가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망이용계약" 체결 (안 제22조의7제2항) ② 전기통신사업자가 망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대가를 산정 (안 제22조의7제3항) - 해당 정보통신망의 전송용량 및 서비스 이용기간 - 계약을 체결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가입자 수, 점유율 등 사업 규모 - 대량구매·장기구매 등에 의한 할인율 - 이미 체결된 망이용계약에서 대가 산정 시 고려한 산정방식	2021-12-21
	• 「블록체인진흥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최인호의원 등 10인)」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활발한 가운데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으나, 대부분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또는 투자자 보호에 집중하고 있어 가상자산의 진흥 및 부작용 완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한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이에 가상자산의 발행 및 거래 등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 기구를 설립함으로써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을 조성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디지털 금융으로의 시대적 전환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블록체인, ICO, 토큰 등 가상자산시장과 블록체인 생태계에 관한 필수적 개념을 정의함 (안 제2조)	2021-12-22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②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블록체인 특구에서의 가상자산 시장 안전성 등을 위한 블록체인 진흥원의 설립,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③ 블록체인진흥원 임원의 직무,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④ 블록체인진흥원의 설립 · 운영 및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회계 · 감독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3조 및 제14조) ⑤ 가상자산 발행을 위한 ICO 신고, 심사, 투자설명서의 작성 · 공시 · 교부, 거짓 기재에 따른 배상책임, 실적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5조부터 제23조까지) ⑥ 건전한 가상자산거래 시장 조성을 위한 금지행위로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함 (안 제24조 및 제25조) ⑦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검사 및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가상자산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6조 및 제27조) ⑧ 블록체인진흥원으로 하여금 가상자산의 상장 및 상장폐지를 위한 규정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의함 (안 제28조)	
환경노동 위원회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1인)」 환경오염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상하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환경책임보험제도가 지난 5년간 보상 실적이 극히 저조하고, 보험금 지급이 장기간 소요되며,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건강피해에 대해서는 보상 실적이 미흡한 등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음. 또한, 재보험료 수입 확대에 적립액이 증가하고 있는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의 활용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보험가입자 및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사업 추진이 곤란한 실정임 이에 정부가 실시한 역학조사 등을 통해 보험 가입 시설로 인한 점진적 환경오염피해가 확인된 경우, 보험을 통해 신속히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손해액 등에 관한 조사를 보험자에게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의 용도에 손해조사, 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중소기업 보험료 지원 등을 추가하여 환경책임보험 및 구제제도의 혜택을 확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의 심의 기능에 구제계정 사업과 구제계정의 관리 · 운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안 제16조제1항)	2021- 12-17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환경노동 위원회	② 역학조사, 청원 건강영향조사 등 결과, 피해가 큰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보험자에게 손해 조사를 요구하거나 손해조사를 실시하여 보험자 등에게 통보하는 근거를 신설함 (안 제 20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③ 구제계정의 설치·운영 주체를 운영기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운영기관에 위탁 함 (안 제35조) ④ 구제계정의 용도에 손해조사, 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중소기업 보 험료 지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오염피해구제 및 피해 경감·복원에 필요한 비용 등 을 추가함 (안 제36조) ⑤ 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실태에 관한 조사 근거를 신설함 (안 제38조의2)	2021- 12-17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0인)」 정부는 대기·폐수 등을 환경오염물질을 대규모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통합관리의 일환 으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도입했으며, 일명 굴뚝산업으로 분류된 폐기 물 소각장, 화력발전소, 철강, 석유화학 등 산업업종 대부분을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대상으 로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하였음 통합관리대상에 포함된 업종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학적 배출영향분석을 통해 맞춤형 허가 배출기준이 설정되고, 5년마다 허가배출기준을 재검토하는 등 환경기술 발전상황을 지속적 으로 사업장 관리에 투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멘트소성로가 통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환경영향이 크지만 통합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시멘트 제조업 등을 통합관리대상에 포함 하여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2022년 이후에 통합허가 대 상이 되는 업종에 대해서도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률 적용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합허가 대상 업종별 적용시기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함 (안 제6조제1항 후단)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환경노동 위원회	• 「<u>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0인)</u>」 정부는 석탄발전소 밀집지역 등 대기오염 우심 지역에 대한 맞춤형 대기질 관리를 위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0년부터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4개 권역(수도권,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 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총량제를 확대·시행하고 있음 한편, 대기오염총량제의 핵심 내용인 배출권 거래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장에 배출권 관리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수적이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는 달리 차입, 상쇄, 추가할당 등과 같은 유연성 기제가 부족해 사업장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정부 및 지역 예비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보유근거, 사용기준 등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어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환경부장관은 지역배출허용총량의 증가, 시설 신·증설 등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이 증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배출허용총량을 추가로 할당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7조의2 신설) ② 환경부장관은 사업장의 폐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경우 등에 있어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취소한 배출허용총량은 그 양만큼 예비분이 늘어난 것으로 보도록 함 (안 제17조의3 신설) ③ 환경부장관은 배출권의 추가할당, 이의신청 결과의 처리 등을 위해 예비분을 보유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보유기준, 사용절차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함 (안 제17조의4 신설) ④ 제17조의4에 따라 할당이 취소될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존 이의신청 조항에 해당 내용을 추가함 (안 제18조제1항) ⑤ 총량관리사업자는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허용총량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부족한 배출허용총량은 다른 이행연도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0조의2 신설) ⑥ 총량관리사업자가 외부 감축활동으로 오염물질을 저감할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상쇄 배출허용총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양만큼 배출량을 줄인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안 제20조의3 신설) ⑦ 법률 개정에 따라 할당취소 사유를 보고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 (안 제49조제1항 신설)	2021-12-17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환경노동 위원회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동위원회 등 12인)」 현행법에서는 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함량 및 유해성정보, 노출정보, 용도에 대하여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변경신고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또한, 현행법에는 권리·의무 승계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화학물질 등록·신고를 하거나 등록등면제확인 등을 받은 자가 그 지위를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새로이 화학물질 등록·신고를 하거나 등록등면제확인 등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을 신고한 사항 중 신고한 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의 명칭, 용도, 함량 등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1월 말까지 변경신고하도록 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안 제33조 신설 및 제54조제1항) ② 화학물질 등록·신고를 한 자 또는 등록등면제확인 등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지위를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5조의2))	2021-12-17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폐기물에 대한 규제 또는 재활용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을 통한 재활용 촉진보다 재활용 제품의 수요 확대를 통한 자발적 재활용 산업의 촉진이 보다 궁극적이고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및 각급 학교에 재생종이를 구매할 의무를 부여하고, 구매 실적 보고, 구매의무 미이행 기관에 대한 명단 공표, 구매실적의 기관평가 반영, 출판물의 재생종이 사용권고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재생종이 대한 수요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자원 재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37조의2 신설)	2021-12-20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환경노동 위원회	•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안(강은미의원 등 10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과 탈탄소 산업으로의 전환은 일자리, 일의 형태와 내용 등을 급격히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또한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발전과 변화에 따라서도 일자리, 일의 형태와 내용 등의 변화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정부는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공정한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을 준비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근로자와 취약계층 등은 산업전환 계획 수립 및 이행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음. 근로자와 취약계층이 능동적 주체가 아닌 단순히 보호와 시혜의 대상에 머문다면, 기후위기 대응과 기술변화에 따른 전환의 과정은 기존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확대 재생산하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음 이에 법률을 제정하여 탈탄소 산업으로의 전환 과정에 일하는 사람,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일터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여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이 법의 목적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 및 디지털 기술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정책을 수립하고, 일하는 사람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주체들의 참여에 기반한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전환을 통해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을 실현하는 것임을 명시함 (안 제1조) ②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의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와 디지털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수립·이행하도록 책무를 명시함 (안 제3조 및 제4조) ③ 기후위기와 디지털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안 제7조) ④ 기후위기 및 디지털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두고,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위원회의 구성 및 사무처의 설치 근거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⑤ 사용자가 사업에 관한 중요한 계획 수립 및 결정을 하는 경우 노동조합 등과 공동 결정하도록 하고, 노동조합 등이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규정함 (안 제19조 및 제20조)	2021- 12-23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사무처	12/31(금)	「해외의회 포커스」 제70호 발간	
국회도서관	12/27(월)	「법으로 보는 인공지능」 발간 - 주요국의 인공지능 법률 수록	
	12/28(화)	「현안, 외국에선?」 제26호 발간 - 영미권 국가들의 주 4일 근무제 현황 및 사례	
	12/28(화)	국회의장단 구술총서 제10권 「대한민국 국회를 말한다: 강창희」 발간	
예산정책처	주중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 12월호 발간 - 코로나19 확산 전후 민간부분 부채 변화 국제 비교 - 우리나라 가계부채 현황 분석	
	주중	「2021년 주요국 경제 현황 분석」 발간 - 주요국의 경제여건을 분석하고, 코로나19 대응의 결과로 나타난 유동성 팽창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를 점검	
	주중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발간 - 주요 OECD 국가의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성장 현황을 분석하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사례를 살펴봄	
	주중	「인구구조변화를 반영한 이전지출 확대의 세대간 영향 분석」 발간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이전지출 확대와 세대간 영향을 중첩세대모형 (OLG-CGE)을 이용하여 분석	
입법조사처	12/29(수) 07:30	「제12회 NARS 시선과 논단」 - 교육 위기의 극복과 미래인재 양성 방향	ZOOM
	12/30(목)	2022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발간 - 2022년도 국가적 과제와 현안을 발굴하여 입법적 시사점과 국회 차원의 대응과제를 종합적으로 분석·정리	
미래연구원	12/30(목)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35호 발간	

[별첨1] 제392회 국회 임시회 상임/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특별위	12/28(화) 14:00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 (문체위)	- 미디어 신뢰도 개선 관련 「언론중재법」 등 논의 - 특위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환노위	12/28(화) 14:00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	법안 심사
국토위	12/27(월) 10:00	전체회의	법안 심사
	12/29(수) 10:00	국토법안심사소위	법안 심사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12/27(월) 09:30	차기 정부 무엇을 할 것인가?	박성준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12/27(월) 10:00	청년고용의무제 제도 개선 토론회	박용진, 오영환, 이소영, 장경태, 장철민 의원실 외	의원회관 2소회의실
12/27(월) 10:00	공공클라우드 전환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윤영찬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12/27(월) 10:30	대한민국 수소경제 정책방향	송갑석, 배준영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12/28(화) 10:00	국민건강 보호와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윤준병 의원실, 대한의사협회 외	의원회관 2소회의실
12/28(화) 14:00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토론회	조승래 의원실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
12/30(목) 15:00	'21 FORUM 대한민국 교육 이대로 좋은가	이명수 의원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2] 지난 주 뉴스레터(제115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소속기관>

기관	주요 일정	
국회도서관	12/21(화)	「NABO 재정동향&이슈」 제18호 발간
	12/22(수)	「NABO Focus」 제40호 발간 - 최근 국제유가 동향 및 전망
입법조사처	주중	「이슈와 논점」 발간 - NFT·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자산(지식재산)의 가치창출
	주중	「NARS 현안분석」 - 「형사사법 신뢰회복을 위한 국민참여재판의 과제」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의 및 향후 과제」
	주중	「NARS 입법·정책」 - 「선거관리 실태와 개선과제-투·개표 관리를 중심으로」 -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지원정책 현황과 개선 과제」
미래연구원	12/23(목)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34호 발간

<국회의원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12/20(월) 14:00	관광 서비스산업 위기극복 세미나 - 진단과 해법	박정 의원실	국회도서관 강당
12/20(월) 14:00	NFT 정책 토론회 - 시장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 방안 모색	노웅래, 김병욱, 김영진, 이상헌, 이정문 의원실	유튜브
12/21(화) 14:00	메타버스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이상민, 서병수 의원실,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외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
12/21(화) 15:00	부동산정책과 금융개혁	김의겸 의원실, 한국토지정책학회 외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 | | |
|---|----------------|-----------------------|
| •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 T. 02-316-4630 | E. dybaek@shinkim.com |
| • 박현주 (Hyunju Helen Pak) 선임외국변호사 | T. 02-316-4212 | E. hpak@shinkim.com |
| • 김성범 파트너변호사 | T. 02-316-4432 | E. sbkim@shinkim.com |
| • 홍정아 (Claudia Hong) 선임외국변호사 | T. 02-316-4487 | E. cahong@shinkim.com |
| • 방세희 소속변호사 | T. 02-316-1773 | E. shbang@shinkim.com |
| • 노지은 소속변호사 | T. 02-316-2573 | E. jeroh@shinkim.com |
| • 서예지 소속변호사 | T. 02-316-1787 | E. yjiseo@shinkim.com |
| • 나인선 소속변호사 | T. 02-316-1795 | E. isna@shinkim.com |
| • 문응필 소속변호사 | T. 02-316-4047 | E. epmoon@shinkim.com |
| • 최유리 소속변호사 | T. 02-316-1748 | E. yrchoe@shinkim.com |
| • 성재열 소속변호사 | T. 02-316-1777 | E. jysung@shinkim.com |
| • 조성환 소속변호사 | T. 02-316-2596 | E. suhcho@shinkim.com |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